

01 국세기본법상 총칙에 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 [CPA 2025]

-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불복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.
- ②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.
- ③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로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경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,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이 아닌 재단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·관리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본다.
- ⑤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, 과세관청이 송달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여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서류를 확인한 때 송달한 것으로 본다.

정답 ⑤

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, 과세관청이 송달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여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본다.

0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, 연대납세의무,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 [

CPA 2025]

- ①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.
- ② 법인은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, 과점주주 및 영농·영여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- ③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회사는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- ④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 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⑤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
정답 ②

법인은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 참고로 과점조합원은 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뿐,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03 국제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·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 [CPA 2025]

- 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.
- ②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 확정된다.
- ③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.
- ④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지만, 국제징수의 소멸시효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.
- ⑤ 납세자가 신고하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,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.

정답 ①

중간예납하는 법인세(정부가 조사·결정하는 경우는 제외)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.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자동확정 대상이 아니다.

04 국제기본법상 수정신고, 경정청구,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 [CPA 2025]

- ① 국내원천 이자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와 다르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세액이 감액된 경우 경정청구는 원천징수대상자만 가능하다.
- ② 수정신고, 경정청구, 기한 후 신고 중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.
- ③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.
- ④ 기한 후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.
- ⑤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
정답 ①

국내원천 이자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와 다르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세액이 감액된 경우 경정청구는 원천징수대상자 뿐만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도 가능하다.

